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 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제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2009고합100,109(병합)]

【전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21인 【검 사】조경헌 외 1인 【변 호 인】변호사 김차곤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8), 피고인 2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0), 피고인 2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1)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7), 피고인 2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9)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0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에 대한, 192일을 피고인 13에 대한, 167일씩을 피고인 18, 피고인 20에 대한, 166일을 피고인 22에 대한 위 각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5,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10, 피고인 16, 피고인 18, 피고인 20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19, 피고인 21, 피고인 22의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